

# 포 향 시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742호 2009. 8. 18(화)

선	기 관 의 장
람	

## 포 향 시

○부시장지시사항..... 2

### ◀ 입법예고 ▶

○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(제2009-887호) ..... 6

회								
람								

**부시장 지시(훈시)사항**

- 2009. 8. 17(월) 간부회의 -

**포 함 시**

관리 번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8. 17)</p>	<p>○ 2009년도 을지연습 훈련성과 거양 당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상소집 알림시스템을 대상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강(전화시스템 도입)하기 바라며,</li> <li>- 민간인들의 훈련참관을 시행하고 훈련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관심제고 및 훈련성과를 거양하기 바람.</li> <li>- 훈련기간 중 민원처리 지연 등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무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</li> </ul> <p>○ 예산사업과 일반사무 추진상황 점검 및 조속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산 편성된 사업의 발주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고 미발주 또는 이행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추진하기 바라며,</li> <li>- 부서별 추진 일반사무 중 부진사업, 문제사업에 대한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일제점검을 실시하기 바람.</li> </ul>	<p>전 부 서 (재난안전과) (감사담당관) (자치행정과)</p> <p>전 부 서 (기획예산과)</p>

관리 번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8. 17)</p>	<p>○ 부서별 시민에 대한 시정홍보 강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보건, 사회복지, 생활개선 분야 등 시민접촉이 많은 부서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.</li> </ul> <p>○ 환동해 거점도시회의 준비 및 진행철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8월 18일 개최되는 환동해거점도시회의가 전부서의 협조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.</li> <li>- 매일 회의내용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폐회 시까지 언론보도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,</li> <li>- 회의를 통하여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추진하고 시민들이 회의내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</li> </ul> <p>○ 시 경계지역 및 연도변 환경정비 추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근 시군과 연결지역 도로변 풀베기, 꽃길조성 등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, 시 경계 표지판은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정비하기 바람,</li> <li>- 특히, 연도변 풀베기 실시로 고향을 찾는 귀향객들에게 고향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바람.</li> </ul>	<p>전 부 서 (사회복지과) (남·북보건소) (농업기술센터)</p> <p>전 부 서 (경제통상과) (공보담당관) (항만정책팀)</p> <p>전 부 서 (새마을봉사과) (남, 북구청)</p>

관리 번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8. 17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뢰받는 공직풍토조성 강력추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건설을 위한 신뢰받는 공 직 풍토조성 지침을 시달하고 공직기강이 확립 될 때까지 상시감찰을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므로</li> <li>- 전부서장은 출퇴근 시간엄수, 민원인과의 개별만 남 자제 등 공직기강확립 제반사항을 직원들이 철 저히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주지시키기 바람.</li> </ul> </li>   <li>○ 신항만, 월드로봇올림픽피아드의 증점홍보 실시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항만 이용시의 이점, 포항에서 열리는 월드로봇 올림픽피아드의 기간 등을 TV, 라디오를 통해 증점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고,</li> <li>- 신항만 방문객을 위한 전망대, 식당, 홍보관을 설 치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,</li> <li>- 대구, 경북의 도민과 기업체에 홍보매체를 활용하 여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.</li> </ul> </li>   <li>○ 시민불편 각종사업장 공사기간 단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공사가 이행부진 및 장기 공사화로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음.</li> <li>- 조속 완공 및 공기단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박 차를 가하고, 특히, 북부시장 주변 등 오·우수 분리공사의 조기준공을 반드시 이행하기 바람.</li> </ul> </li> </ul>	<p>전 부 서 (감사담당관)</p> <p>전 부 서 (항만정책팀) (미래산업팀) (공보담당관)</p> <p>전 부 서 (건설환경사업소) (건 설 과) (상수도사업소) (남, 북구청)</p>

관리 번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<p>훈 시 (8. 17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포항의 변모된 모습(개벽) 시민홍보 철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 직원들이 먼저 일부 개통된 포항IC에서 신항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,</li> <li>- 포항의 도시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포항개벽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.</li> </ul> </li>   <li>○ 체납세 및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, 특히 과태료 징수는 전부서가 해당되므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기 바람.</li>   <li>○ 북부해수욕장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들었음.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기 바람.</li>   <li>○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여러 사정으로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.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.</li>   <li>○ 오천지역 상수도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내년 당초예산 계상, 세부추진계획 수립보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바람.</li>   <li>○ “월드로봇올림픽아드” 대회가 내실 있게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.</li> </ul>	<p>전 부 서 (자치행정과) (항만정책팀) (공보담당관)</p> <p>전 부 서 (재정관리과)</p> <p>교통행정과 (북 구 청)</p> <p>동빈내항복원팀</p> <p>상수도사업소</p> <p>미래산업팀</p>

**입법예고**

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포항시장 박



2009년 8월 13일

포항시 공고 제2009-887호

**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제정이유**

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설치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의 종류를 규정함(안 제4조)
- 사업장 운영에 따른 절차 및 운영비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사업장에 근로할 수 있는 사업 참여자 등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6조)
-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기준을 정함(안 제10조)
-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규정을 정함(안 제11조)
-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정함(안 제12조)
- 위탁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16조)

3. 관계법규

○ 장애인복지법

제1조(목적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음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

○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

4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☎270-2972, FAX 270-2960)에게 제출하거나,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
5. 기 타

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(www.ipohang.org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.

##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에 의한 포항시 중증장애인다수 고용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장애인”이라 함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, “중증장애인”이라 함은 「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」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위치)**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(이하 “사업장”이라 한다)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8-1번지에 둔다.

**제4조(시설 종류)** 사업장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1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며, 근로가 가능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과 자체 수익을 통한 임금지급이 가능한 자립형 사업장을 목표로 한다.

**제5조(운영)** ① 사업장은 포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운영한다. 다만,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업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.

③ 사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.



- 제6조(사업 참여자 및 직원)** ① 사업 참여자는 포항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로 하되 등록 장애인 중 근로활동이 가능한 자를 우선으로 하며,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은 60퍼센트 이상, 비장애인은 전체 고용인원의 3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.
- ② 수탁자는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, 그 외 필요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.
- ③ 사업장 책임자는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.

- 제7조 (시설의 위탁 및 방법)**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공신력, 전문성, 재정능력,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는 수탁자 선정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
1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
  2. 포항시의회 의원
  3. 포항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국장
  4. 그 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-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이 조례에 정한것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제9조 (시설의 위탁 운영)** 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.
- ② 제5조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단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·갱신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탁자는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 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연장·갱신은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운영하는 등 시장이

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.

**제10조(급여)** ①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에 준하여 지급하되,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수익이 과소 발생이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.

② 제6조제1항에 의한 비장애인과 제2항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.

**제11조(수익금 사용)** ① 수탁자는 사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내 고용장애인, 비장애인, 직원에 대한 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.

② 제1항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사업 참여자 및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설운영 개선의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수탁자 의무)** ① 수탁자는 제1조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사업장 재산을 사업장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.

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산과 사업장 시설물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사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⑤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,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승인)**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사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, 폐지의 경우
3. 제11조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**제14조(보고)**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예산 및 급여지급 등의 회계운영 및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

**제15조(지도·감독)**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위탁 취소)**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수탁자가 제12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  - 2.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,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
  - 3. 수탁자가 사업장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와 위탁취소를 원할 경우
  - 4. 사업장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-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장 운영에 사용되던 부대시설, 장비, 집기 등 일체를 포함하여 반환한다.

**제17조(고용승계)**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사업 참여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18조(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**부 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【별지 제2호 서식】

위탁운영 결정 통지서

시설(사업)명	
소재지	
운영법인(단체)명 및 운영자	/ (주민등록번호 )
법인(단체)소재지	
시설의 장	(주민등록번호 )
위탁운영기간	
특기사항	

「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 
사업장 운영 수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통지 합니다.

년 월 일

포 항 시 장 인

**【별지 제3호 서식】**

**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위·수탁운영에 관한 계약서**

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사업장 조례” 라 한다) 제5조제1항에 의하여 포항시장(위탁자 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와 ○○○(수탁자 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간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(이하 “사업장” 이라 한다)의 위·수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○ 시설(사업명) : 포항시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

○ 시설(사업장)위치 :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8-1번지

**제1조(목적)** 이 계약은 사업장 조례 이외의 사항을 계약하여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.

**제2조(위·수탁기간)** 위·수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**제3조(재산 관리 및 활용)** ① “을” 은 수탁 재산에 대한 관리 운영권과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 하여금 권리를 설정하게 하거나 전매 또는 대여 할 수 없다.

② “을” 은 위·수탁기간 동안 수탁 재산관리와 사업장 안전 등에 필요한 각종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장을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 토지 및 부대시설, 물품은 “갑” 이 “을” 에게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다.

④ “을” 은 본 계약을 이유로 수탁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.

**제4조(업무내용)**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(기능성 건강발효식품 생산·판매사업)으로 한다.

**제5조(증가재산 처리)** 위·수탁기간 동안 “갑” 의 지원금 및 “을” 의 투자로 인하여 계약체결 당시보다 증가된 재산은 “갑” 에게 귀속한다.

**제6조(사업계획서 작성)** ① “을” 은 매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“갑”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경영, 장애인 고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7조(수탁자 의무 및 준수사항)** ① 사업장 운영에 특별히 지정된 바 없는 사항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다.

② 회계관리는 「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」 및 「포항시 재무회계 규칙」에 따른다.

③ “을”은 매년 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한다.

④ “을”은 이 계약서와 사업장 조례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.

**제8조(승인)** “을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“갑”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1. 기계, 기구 등 동산에 있어서 사업 변경 또는 사용 불능으로 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
- 2. 사업장 조례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

**제9조(위탁 취소)** ① “갑”은 “을”이 사업장 조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.

② “을”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시는 늦어도 해지일로부터 3개월 전에 “갑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**제10조(손해배상)** 본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계약 해지일 까지의 적자 재정과 훼손 또는 손실 재산은 “을”이 변제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해석)**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장 조례에 따르며,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는 “갑”의 해석에 따른다.

**제12조(계약 효력)**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

**제13조(계약서 보관)**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을 보관한다.

. . .

갑 : 포 항 시 장 인

을 성 명 : 인

주 소 :